#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74

발의연월일: 2024. 6. 12.

발 의 자:이해식·서영교·조 국

박상혁 • 윤준병 • 정을호

한병도 · 염태영 · 황명선

박정현 · 서영석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존 1단계 재정분권 추진 당시에는 중앙-지방이란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광역과 기초 간의 불합리한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되지 않고 진행되어 왔음.

그러나 실제 재정분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광역과 기초 간의 이견 이 발생하고 있으며, 단순히 지방이란 이름으로 광역과 기초를 포괄해 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.

핵심적인 쟁점은 현재의 구조에서는 재정분권의 실행으로 인한 혜택은 주로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반면에 국고보조사업 등의 이양으로 인한 부담은 기초자치단체에 부여된다는 것임.

따라서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의 광역-기초 간 재원분담에 대해 지방정부(광역-기초) 간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이 필요함.

이에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 • 협의 • 조정

하기 위하여 광역·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해, 시·도비보조사업의 시·도와 시·군·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등을 논의하도록 함(안 제27조의9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이하"를 "이하 이 조에서"로 한다.

제2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7조의9(광역·기초재정관리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광역·기초재정관리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1. 시·도비보조사업의 시·도와 시·군·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
  - 2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 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고,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.
  - 1.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
  - 2.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

- 장・군수 또는 구청장의 제청으로 시・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,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.
-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- 2. 시장・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
-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해당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의 수행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-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의2(지방재정관리위원회)	제27조의2(지방재정관리위원회)
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	①
및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다음	
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	
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	
지방재정관리위원회( <u>이하</u> "위	<u>이하 이 조에서</u>
원회"라 한다)를 둔다.	<u>.</u>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⑧ (생 략)	② ~ ⑧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제27조의9(광역·기초재정관리위
	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지방재
	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
	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
	도지사 소속으로 광역・기초재
	정관리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
	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	1. 시・도비보조사업의 시・도
	와 시・군・자치구 간 재원분
	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
	2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
	원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
	•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
	의 요청에 따라 시·도지사가

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 지사가 되고,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- 1.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 청장
- 2.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학 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 로서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 의 제청으로 시·도지사가 위 촉하는 사람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 최하고,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 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 가로 개최할 수 있다.
-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
- 2.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해당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의 수행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 ⑤
 그
 밖에
 위원회의
 구성과

 운영
 등에
 필요한
 사항은
 시・

 도의
 조례로
 정한다.